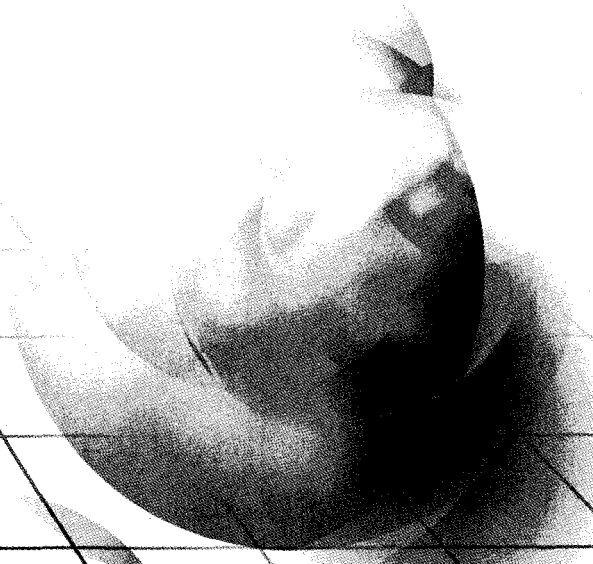


가스보일러 설치 시공세미나

가스보일러 설치 · 시공과 PL법과의 관계

- 
- ① 가스보일러 사용실태 및 소비자 불만사례
 - ② 가스보일러 사고경향 및 사고사례
 - ③ 가스보일러 설치 · 시공과 PL법과의 관계
 - ④ 가스보일러 설치 · 시공방법 및 관련법규 해설

1.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

(법률제6109호 신규제정 2000. 01. 12.)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2.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제조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제3조 (제조물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

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 (면책사유)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2호 내지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제5조 (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6조 (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는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소멸시효 등)

①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

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8조 (민법의 적용)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II. 제조물책임 사례연구

1. 미국

가스가 새는 온수히터(Water Heater) 설치
업자의 엄격책임(Strick Liability)

네바다주 최고재판소 Sanderson v.
Barnes

CCH Prod. Liab. Rep. 1 6552 (Nev.
Sup. Ct. 1971)

가. 사실

Barnes Contracting이라는 명칭으로 영업을 하는 피고 Willis Barnes는 원고 Mildred I. Sanderson 부인과의 계약에 의해 네바다주 워커호수 근처에 있는 부인의 주택을 개수하기로 하였다. 공사는 목수일과 각종 기구를 모두 갖춘

LP가스 시스템으로 설치하는 일이었다.

그 중에는 욕실(Bathroom)에 온수히터를 설치하는 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는 온수히터를 설치하기 위해, 욕실에서 마루를 통해 커넥터(connector)까지 파이프를 통과시켰다.

욕실 아래 파이프의 설치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어나온 프로판가스가 모이고, 모여있던 가스가 파이프를 통해서 욕실까지 이르러 온수히터의 불꽃으로 점화하여 폭발하면서 주택에 화염을 일으켜 주택과 그 안에 있던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

원고는 소송원인으로 ① 피고의 과실(negligence) ②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③ 보증위반(breach of warranty)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재판소는 ②와

③의 소송원인에 의거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①의 과실에 기한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배심은 피고에게 유리한 평결을 하였고 원고는 항소하였다.

나. 판결

1) 재판소와 주식자는 MacPerson v. Buick Motor Co. 사건(111 N.E. 1050(N.Y.1916))이후 제조물책임(PL)사건에 있어서의 소송이론을 추진해왔다. 광범위하게 Pressor 학장의 주장에 의거하여 선의의 소비자가 결합제품에 의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를 제소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추진된 이론의 기초로 손해를 입은 소비자는 과실의 입증을 요구하지 않는 엄격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제조자 및 판매자는 보험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그 책임은 단지 손해만의 증거에 의해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제품에 결함이 있을것 및 그 결함이 제품이 제조자의 지배하에 있을 때 설계 또는 제조로부터 발생한 것일 것을 입증하는 것은 원고의 부담이다.

그러나, 제조자에게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 제조자가 선의로 행하였는가 혹은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위 가능한 예방수단을 취했는가에 따라서 차이는 나지 않는다.

제품이 제조자의 지배를 벗어난 때 실제로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면 책임이 부과된다. 어느 쪽에도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 누가 손실을 가

장 잘 부담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서 과실이 없는 경우에 책임을 부담시켜 손실을 전환시키기 쉽고, 더욱 증대하는 경향이 있다.

엄격책임의 법리는 식품, 자동차, 의약품 및 기타 제품에 의해서 상해를 입은 사건에 적용되는 것처럼 주택과 건축업자에게도 적용되어 왔다.

제품의 성질상 건축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우월하고 독점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건축업자 또는 제조업자는 합리적인 한계 내에서 그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이것은 본 건과 같이 계약자가 위험제품을 취급하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통상의 구매자는 200개의 주택 대량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에서보다도 2개의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에 대해서 연돌 연도 혹은 난방기구의 통풍구, 또는 콘크리트 슬래브기초로 덮은 불량배관의 결함을 탐지하는 것이 곤란하다.

원고가 기구를 그 의도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중에 그 기구를 의도된 용도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결함있는 설계 및 제조 결과 상해를 입은 것, 더불어 원고가 그 결함을 알지 못한 것을 입증하는 때는 원고의 입증책임은 완수된다.

Owner(발주자)는 배관시스템 (piping system) 제조자의 기능을 신뢰한다.

그래서, 발주자는 제조자의 우월한 지식에 의해 상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 Sanderson 부인이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는 제품은 부인의 주택에 이미 설치된 것의 가스 시스템에 Barnes가 덧붙인 가스시스템이었다.

전문가 증인은 화재는 욕실 아래에 가스가 새는 설치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증언하였다.

Sanderson 부인은 주택의 공사가 완료된 후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은 Barnes의 사용인의 손을 떠나지 않았다고 증명하였다.

가스가 누설되는 설치는 결합제품의 정의에 들어있다. Sanderson 부인에게 가스의 접속과 시스템의 복잡한 기능을 알기를 기대하는 것은 부당하다.

부인은 적절한 제품을 제공하는 Barnes의 기능을 신뢰하였다. 시스템은 기구를 통과해서 동관을 붙인 것이었다.

이것은 이와 같은 공사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알고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

Barnes의 의무는 적어도 수행할 공사와 공급할 제품의 한도 내에서 주택을 거주하기 위해 안전하게 하는 것이었다.

2) 하급재판소는 보통법 (Common Law)의 엄격책임 소송에 대해서도, 제정법의 묵시보증 위반 소송에 대해서도 Barnes는 “물품”을 제조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엄격책임의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 Barnes는 “제품”(product)을 제조 판매했다고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 건은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의 적용을 받는 “물품”(goods)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1심 재판소가 원고에게 과실을 이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하고, 원고에게서 보통법의 엄격책임의 법리 및 제정법의 묵시보증에 의한 이익을 빼앗는 것은 잘못이다.

원판결을 뒤집어엮고 사건을 되돌려 보낸다.

다. 해설

본 건은 제품자체가 아니라 제품설치공사에 기인한 사고에 대해서 공사를 한 계약자에게 불법 행위법상 엄격책임의 법리를 적용한 주목해야할 판례이다.

바야흐로 미국 모든 주가 엄격책임의 법리를 채용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다.

이 판결은 이와 같은 법의 발전에 기여한 중요한 논문을 인용한다. 또 엄격책임의 법리를 채용하는 것은 손실을 누구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하는 정책에 의거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2. 일본

가스스토브(Gas Stove)에 의한 인화 사건

가. 사실

X의 아버지 A는 1973년 12월 말경, Y제조사에서 가스스토브(도시가스용)를 전기기구판매점B에서 구입하고 자기 집 거실에 놓고 사용하였다. 그런데 스토브가 1975년 1월경부터 불꽃의 형상이 불규칙하고 불꽃 끝이 가드 밖으로 10cm 이상 나와 이상한 연소상태를 보이게 되었다.

같은 해 2월 8일 X가 잠옷을 입은 상태로 스토브로 열을 쬐고 있었는데 돌연 옷에 불이 붙어 그 결과 X는 신체면적의 30%에 2~3도의 화상을 입었다.

그 후 스토브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같은 해 11월 19일 A가 동료 C에게 빌려주었고, C는 이것

을 천연가스용으로 버너를 교체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연소상태가 균일하지 않았다.

그래서 A는 1978년 3월 13일 스토브를 국민생활센터에 맡겨 연소검사를 받았다. 센터에서는 이상연소상태를 확인하고 가스회로부를 분해 조사하였는데 먼지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제거한 후에는 연소상태가 정상이 되었다.

X는 민법 709조 및 민법 415조를 근거로 Y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X는 불법행위를 근거로 하는 청구에 대해서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및 표시상의 결함을 주장하고, 더불어 소비자는 전문적, 기술적 지식이 결여되어 있어서 제조물의 결함의 주장·입증시에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으므로 제조자와의 공평을 고려하면, 소비자는 ①제조물을 용법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한 것 ②그 사용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것 ③그 손해가 적정한 사용에 의해 통상 발생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면 족하다고 주장하였다.

나. 판결

소비자에게 있어서 제조물의 구조상 또는 기능상의 결함의 소재를 규명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입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되지만, 소비자가 사고의 원인이 된 제품을 자기 주위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상 기능상의 결함을 규명하여 입증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비록 과학지식 또는 전문지식의 부족이 이것을 방해 한다해도 감정에 의해서 이것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고, 더욱이 재판에 있어서 증명 은 논리

적 과학적으로 완벽할 것일 필요는 없으며, 통상인이 안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정도의 개연성을 가지고 확실함이 규명되면 족하다.

사안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능하며 규명 및 증명의 곤란을 이유로 제조물책임소송에 있어서 제조물의 구조상 또는 기능상 결함의 부존재의 주장·입증책임을 피고인 제조자에게 일률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공평에 적합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리고, 본 건에 있어서 스토브의 본체는 원고측에 보존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원고가 결함의 입증을 하는 것은 원고에게 있어서 반드시 곤란한 것은 아니며, 한편, 사고 당시의 노즐과 버너는 개조에 의해 떼어내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함의 부존재 증명책임을 제조자에게 지도록 하면 그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곤란하고 그것은 공평의 견지에서 보아 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장·입증책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본 건 스토브의 설계상 또는 제조상의 결함이 존재한 것에 대한 증명이 없다.

또 이상연소시 처치에 대해서 표시할 의무를 해태했다고 원고는 주장하지만, 본 건 사고가 이상연소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하는 증명이 없으므로 이 점의 주장에도 이유가 없다.

다 해설

1) 재판에서 문제가 된 원인

원고는 제조물의 설계 및 제조의 결함으로 이상연소가 발생하고 그것에 의해 사고가 일어났다

고 주장하였지만 설계의 결함은 증명하지 않고 제조의 결함도 사고 후에 행한 칼로리 변경을 위한 개조 때문에 사고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서 증명하지 못했다.

결국 이상연소가 발생하는 제조물이 사고현장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못했다.

원고는 설명서가 이상연소에 관한 설명과 처치에 대한 지시가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했지만, 판결은 본 건 사고가 이상연소에 의해서 발생 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판결에서는 사고가 일어난 원인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2) 기술적인 검토의견

표시의 결함(이상연소의 정의 및 그 때의 처치에 대한 지시가 불비된 것)은 실제로 있었다고 생각된다. 연소하는 가스스토브에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두는 것은 인화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표시해야 할 것이다.

라. 제조물책임으로서 고려해야 할 사항

1) 제조자가 해야 할 사항

표시의 개선, 가연성 물질의 접근금지, 이상연소시의 처치 등을 명시할 것.

2) 소비자가 해야 할 사항

연소기기의 위험성을 인식할 것. 유아에게도 위험성을 교육할 것.

마. 시사점

제조물은 물건이기 때문에 물적 증거가 중요하다. 본 건과 같이 증거가 되는 물건이 개조되기도 하고, 다른 판례에서처럼 분실되기도 하면 제조물의 결함 존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표시의 결함(이상연소의 정의 및 그 때의 처치에 대한 지시가 불비된 것)은 실제로 있었다고 생각된다. 연소하는 가스스토브에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두는 것은 인화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표시해야 할 것이다.

3.한국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사례)

가. 가스보일러 설치 잘못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 청구인은 1998. 10. 1. 0000구 00동 소재 청구인 주택의 난방 및 온수 설비를 기름 보일러에서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라는 피청구인의 권유를 받고 자신의 주택이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이라 보일러를 교체할 경우 기존배관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문의한 바 보일러의 입력계를 조정해 놓으면 배관에 문제가 없다는 피청구인의 답변을 듣고 1998. 12. 9. 가스보일러 2대를 설치함.

○ 그러나 공사 후 5일 만인 1998. 12. 14. 청구인 주택 1층 창고부분의 난방용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1층 바닥과 지하세대가 침수되는 등 사고가 발생하여 청구인이동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조치해 주지 않아 타 시공업자인 '△△설비'를

통해 난방배관을 전면교체하고 거실마루와 도배 공사를 실시함.

이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과 보일러를 철거하고 대금환급 및 겨울철 보수공사에 따른 생활상 불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피해발생이 청구인 주택 난방배관의 노후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보일러의 사용압력을 $1\text{kg}/\text{cm}^2$ 이내로 한정해 사용토록 하였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데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없으나 도의적 차원에서 이전 설치보일러를 회수하고 제품가를 환불할 의사가 있으며, 그 이상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하여 분쟁이 된 사건임,

1) 사실

가) 보일러의 구입 설치경위 및 배관상태

청구인은 기존에 사용하던 기름보일러의 연료값이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연료 가격이 저렴한 가스보일러로 교체를 고려하던 중 피청구인 'OOO' 으로부터 가스보일러로 교체를 권유받고, 당시 'OOO' 에게 이 건의 주택이 건축된지 20년이 경과한 사실을 알리고, 가스보일러로 교체시 기존 배관의 파손여부에 대하여 상담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OOO' 로부터 '보일러에 부착된 압력계의 압력을 $0.5\sim 1\text{kg}/\text{cm}^2$ 으로 조정해 두면 난방배관이 터지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며, 온수용 배관에도 감압밸브를 설치하면 이상이 없다'. 또 '타지역의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에 가스보일러를 교체하였으나 온수나 난방에 문제없이 가동되고 있다' 라는 설명을 듣고 가스보일러 2대[용량 FF(30,000kcal), FE(13,000kcal)]를 금 1,600,000원에 구입 설치키로 함.

이 건의 주택은 1977. 8. 11. 건축되었고, 사용된 배관재료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철배관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대부분의 배관재료로 강관이 사용되어 왔고 주택 배관을 교체하였던 설비난방공사업체인 'OO설비' 대표 'OOO' 이 강관이라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청구인 주택의 배관재료는 강관으로 추정되며, 공동주택관리령에 강관의 내구연수는 15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주철 배관에 대하여는 규정된 바 없음

나) 난방배관 파손 부위 및 원인

난방배관 파손부위는 청구인 주택 지하1층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바로 위의 1층 거실의 계단 밑 창고바닥 부분으로 1층의 난방배관 인입부분임. 이 건의 난방배관 파손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곤란하지만, 그 주요한 원인으로 난방배관 노후와 보일러의 배관압력을 들 수 있는 바, 이러한 원인이 배관 파손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에 대하여는 확인할 방법은 없고, 배관노후와 보일러의 배관압력이 상호 복합적 작용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

그런데 배관 파손원인중 하나인 보일러 배관 압력설정 및 그 책임에 대하여 청구인은 배관압력은 피청구인이 당연히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사고 발생직후 보일러의 압력이 $2\text{kg}/\text{cm}^2$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었다며, 피청구인이 가스압력을 제대로 조정해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또한 압력조정 방법에 대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협의한대로 시공업체인 'OO설비' 에게 보일러의 사용압력을 $1\text{kg}/\text{cm}^2$ 으로 조정토록 하여

‘OO설비’에서 $1\text{kg}/\text{cm}^2$ 으로 압력조정을 하였고, 배관이 파손되어 누수되는 경우 보일러의 압력은 ‘ $0\text{kg}/\text{cm}^2$ ’ 되어야하나 배관파손 당시 보일러의 압력이 $2\text{kg}/\text{cm}^2$ 으로 설정되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보일러의 압력을 $2\text{kg}/\text{cm}^2$ 으로 설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배관파손의 주원인은 배관의 노후라고 주장함.

다) 이 건의 피해 내역

배관 파손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고발생 당일인 1998. 12. 14.부터 배관공사가 완료된 1999. 1. 1.까지 약 23일 이상 추위로 인하여 생활상 불편함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배관파손 및 누수로 인한 1, 2층의 전체 배관교체비 4,500,000원, 거실마루 바닥재 교체비 1,500,000원, 지하세대 및 안방의 도배공사비 750,000원 등 총 6,750,000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2) 판단

배관 파손원인에 대하여 양당사자간의 주장과 사고당시 현장확인 및 보수를 담당하였던 설비업체 대표 ‘OOO’ 등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배관 파손원인은 배관의 노후와 보일러 압력의 과다한 설정으로 판단되며, 파손원인의 하나인 배관노후의 경우 강관의 내구연한이 15년임을 볼 때 배관은 시공 후 20년이 경과되어 그 수명을 다했다고 볼 수 있음.

또 다른 하나의 원인인 보일러 압력의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 설정하기로 약속했던 압력

$0.5 \sim 1\text{kg}/\text{cm}^2$ 을 초과하여 $2\text{kg}/\text{cm}^2$ 이상 되었던 것으로 보이거나 보일러 사용압력이 설치 당시 조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사용 중 조정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서로의 주장이 상반되어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 할 것인 바 피청구인에게 배관파손 책임을 전적으로 지우기는 어렵다 할 것임.

그러나 보일러를 판매하고 설치한 피청구인이 상담과정에서 청구인을 통해 청구인의 주택 배관이 20년을 경과한 노후된 배관임을 충분히 알았고 보일러를 판매·설치하는 전문가로서 이러한 상태에서 보일러를 교체할 경우에 배관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여야 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일러의 압력만 낮게 설정하며 놓으면 이상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보일러를 교체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있고 결과적으로 배관파손이 되었으므로 전문지식과 기술을 소유한 자가 상품용역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된 선전이나 정보를 제공한 결과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임.

한편, 배관파손으로 발생한 피해금액에 대하여, 우선 배관파손 보수비용의 경우 당시 파손된 1층 창고부분 배관의 직접적인 보수비용이 아니라 전체 노후배관의 교체비용인 만큼 이를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파손부분의 직접적인 배관 보수비용, 이 건의 주택배관 보수업자의 추정금액 400,000원과 누수에 따른 마루바닥재 교체 및 도배 비용 2,300,000원 등 총 2,700,000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임.

또한 사고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에 대한 보상과 보일러 난방기능 불만에 따른 보일러 철거 및 환불요구의 경우 그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나 이 건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뜻과는 다르게 동절기 중 23일 동안 주거불편 등 정신적, 생활상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 보일러를 철거하고 구입가격을 환급하는 것으로 가름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이 건의 피해가 보일러의 압력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나 압력설정주체나 그 책임에 대하여 양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하여 이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한다하더라도 이 건의 배관 파손원인은 배관의 노후와 보일러의 압력의 과다한 설정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 추정됨.

피청구인이 보일러의 판매 및 설치와 관련하여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간 배관 파손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동절기 생활에 피해를 받은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만 보일러 배관이 내구연한을 다하여 가스보일러 교체가 아니더라도 파손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피해금액 2,700,000원의 50%인 1,350,000원을 부담하고, 청구인 주택에 설치된 FF 30,000kcal 및 FE 13,000kcal 가스보일러 2대 철거 및 시공비 1,600,000원을 환급하여주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3) 결정사항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 주택(○○○○구 ○○동 152-59소재)에 설치된 보일러 2대를 철거한

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950,000원을 지급한다.

다) 위 사항을 1999. 7. 12.까지 이행한다.

4) 조정결과

성립

나. 동일하자로 인한 온수기 및 심아전기보일러 보상 요구

청구인은 1998. 6월말 경 ○○시 ○○면 ○○리 278 소재 본인 거주 20평 단층양옥주택에 피청구인으로부터 태양열온수기(이하 '온수기'라 함)와 심아전기보일러(이하 '보일러'라 함)를 총 5,900,000원에 설치받아 사용하던 중에 동년 10월경 동 기기의 누수 및 난방불량으로 2회 수리를 받은 후에도 다시 동일 하자가 발생하고 보일러의 작동이 중단되어 더 이상 제품을 신뢰할 수 없다며 피청구인에게 제품반품 및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거절하여 분쟁이 된 사건임.

1) 사실

가) 주택 및 기기에 대한 일반현황

이 건의 조사자 '○○○'에 의하면 청구인주택은 건평 20평의 단층양옥주택으로서 단열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됨.

온수기의 용량은 300리터로 확인되었고, 보일러는 제품표시사항이 없고 피청구인 이 답변을

기피하고 있어 보일러의 표준난방면적 등 제원이 정확히 확인되고 있지 않으나 비슷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의하면 이 보일러는 800리터 정도의 용량으로 난방면적은 10평정도로 추정된다고 함.

나) 대금 수수 내역

○총구입액: 기기대금 및 설치비를 포함하여 총 5,900,000원.

○현금지급: 3,100,000원

○잔금: 2,800,000원

○잔금지불방법 . 할부금융 24개월(1998. 6. 30 약정)

할부금총액: 3,688,320원 (153,680원 24개월)

할부금납입액: 22,176원

할부잔액: 2,766,144원 ('99. 5. 12 현재)

2) 판단

이 건의 온수기 및 보일러의 하자에 대하여, 1998, 10월 말경 난방이 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여 동년 11. 18, -20. A/S를 요청해 수리를 받았으나 새벽 2시 이후만 난방이 되어 하자가 개선되지 않았고, 또 1999. 1. 22.부터는 난방기능마저 정지되어 수리를 받았으나 역시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달리 하자발생 및 A/S 실시여부에 대하여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조사자 'OO'가 보일러의 난방기능이 되지 않고, 온수기의 급배수관과 보일러에서 누수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한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기기의 제품자체의 하자가 분명 하다 할 것임.

OO이 건의 보일러의 난방 적정성에 대하여 매매계약 당시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여 당초 구입·설치키로 한 보일러의 난방용량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보일러는 TV나 세탁기 등과 같은 제품과 달리 소비자가 주택의 규모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용량의 보일러를 직접 특정 해 선택할 수가 거의 없고, 또한 온수기 및 보일러의 판매권 유시 판매업체에서 주택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해 난방과 온수공급에 적절한 용량의 기기를 설치토록 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음.

청구인의 주택에 적절한 온수기 및 보일러를 설치해 주어야 할 의무는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임. 한편, 이 건의 조사자 'OO'가 유사한 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평 주택에 적절한 보일러의 용량은 1700- 1800리터로 확인되었음을 볼 때 피청구인이 설계하여 주택에 설치한 보일러는 이 건의 주택 난방에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인 보일러의 경우 구입후 1년 내에 동일 하자로 인하여 3회째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품교환 및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있도록 되어 있고, 기 설치된 동종의 기기로 교환을 한다하더라도 기기의 용량부족 등으로 인하여 주택규모에 적정한 난방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이 이 온수기와 보일러를 회수하고 수령한 물품대금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됨.

3)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이 건의 태양열온수기 및 심야전기 보일러를 철거하고 청구인에게 1999. 6. 24. 까지 5,900,000원을 환급한다.

4) 조정결과
성립

III . 모의사례

도시가스공급업체A는 소비자X의 집에 가스보일러 제조업체B가 A의 이름으로 제조한 가스보일러를 시공업체C를 통해 설치하였다.

시공 후 1년 6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제품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X와 그의 아들 5가 CO가스 중독으로 중태에 빠져 병원에서 1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1. 제조물책임 사고로서의 분석

가. 제조물의 해당여부(제조물책임의 객체로 볼 수 있는가?) 검토대상

- ① 가스
- ② 가스보일러
- ③ 설치 · 시공

나. 제조물책임의 주체(누가 제조물책임을 지는가?)

검토대상

- ①가스공급업체A
- ②가스보일러제조업체B
- ③시공업체C

다. 적용가능한 법률(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제조물책임을 지는가?) 검토대상

- ①민법
- ② 제조물책임법
- ③ 기타 특별법